

EU 1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수출현안) 식물성 기름 및 식품에서의 3-MCPD에 대한 안전섭취량 변경

*출처: EFSA 유럽식품안전청 (2018.1.10)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80110>

- EFSA 전문가들은 3-MCPD가 신장 및 남성 생식능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재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를 해옴
- 소비자들 대부분은 음식에서의 3-MCPD의 섭취량을 안전하다고 여김
- 그러나 젊은 계층의 소비자들에겐 3-MCPD에 대한 잠재적인 염려 높은 편임. 특히 유아들에게 위험함
- 3-MCPD에 관한 업데이트 된 의견(2016년)
 -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 및 관련 물질 3-MCPD 에스테르는 일부 가공 식품 및 식물성 오일, 주로 팜 오일에서 발견되는 식품 가공 오염 물질. 특히 3-MCPD와 에스테르는 기름 정제 과정 중에 형성됨
 - EFSA 전문가들, 식품 제조과정에서 형성되는 글리시딜지방산에스테르(GE)와 3-MCPD의 잠재적 위험 평가. GE는 유전 독성과 발암성, 즉 DNA에 손상을 입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는 식물성 기름과 식품의 GE 수준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EU 법안을 최종 확정함
 - 현재 변경된 사안은 3-MCPD 및 에스테르에 대한 것이며, 유럽식품안전청의 GE에 대한 이전 평가는 변경되지 않음

-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3-MCPD 재평가에 개정된 방법을 적용, 안전수준 2.5배 증가
- 유엔 FAO/WHO연합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동일한 독성 학적 자료, 기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3-MCPD의 우려 수준에 관해 전반적인 동일한 결론을 내림

- 3-MCPD 허용 일일 섭취량 (TDI)

EFSA 2017	2.0 μg / kg bw *
JECFA 2016	4.0 μg / kg bw
EFSA 2016	0.8 μg / kg bw

* 체중 kg 당 마이크로 그램

-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및 지방산에스테르의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 성인 인구에서 하루에 2 μg / kg bw의 확정된 TDI를 초과하지 않음 젊은 연령의 소비자와 특히 유아들에게서 TDI의 약간의 초과치 발생
- 안전 수치는 높아졌지만 탈지 대두의 화학분해 과정에서도 나오므로 양조간장, 각종 소스류와 식육가공품, 스낵과자류 등 등 수출 시 주의요망 됨

2. (수출현안) 살모넬라균 발생에 대한 조치

*출처: EFSA (2018.1.17)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80117-0>

- EFSA와 ECDC는 긴급평가에서 프랑스에서 생산된 유아용 조제 분유의 회수 및 리콜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Agona)에 감염된 유아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봄
- 살모넬라균 발병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37명의 1세 미만 유아에게 영향을 끼침. 이는 전체 게놈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WGS) 분석 결과 스페인의 사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그리스에서도 가능한 사례가 발견됨. 살모넬라균 발병 사례는 2017년 12월 2일에 마지막으로 발생했음

- EFSA와 ECDC는 발병 유럽연합회원국들이 역학, 미생물 및 환경조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량 및 사료를 위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와 조기경보대응시스템(EWRS)에 관련이슈를 통지, 발행할 것을 권고
- 회원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함
 - 이 발병과 관련된 유아용 분유는 사용하지 않아야함
 - 분유병 준비 전,후의 손 씻기
 - 분유병은 조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야하며 조제 후에도 2시간 이내에 섭취하지 않으면 내용물 또한 버려야 함
- 다국가 발병의 경우 EU단계에서의 조정이 중요함. 질병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EFSA와 ECDC는 긴급평가를 공동으로 준비. ROA는 공중 보건 측면에서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감염을 유발한 오염된 식품 매개체를 확인, 추적 및 추적 전방조사를 통해 발병의 원인과 오염된 제품이 배포된 곳을 확인. 이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통제조치로써 중요함

3. (수출현안) 식품 내 히드록시안트라센의 위험성 확인

*출처: EFSA (2018.1.23)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80123>

- 식물성 일부 물질인 히드록시안트라센은 DNA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암을 유발하기도 함. EFSA는 이러한 물질을 식품에 첨가할 때의 안정성 평가한 후 위험성 확인함
- 알로에, 세나 종과 같은 식물집단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이러한 식물 추출물은 완하제 및 변통 효능의 음식보충제로 이용됨
- 2013년 EFSA는 식품 내 히드록시안트라센이 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로 고용량, 장기간 사용 및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함. 이후 유럽연합위원회는 히드록시안트라센이 식품에 사용될 때 식물성 원료의 안전성평가 및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일 섭취량에 대한 권고사항을 EFSA에 요청함

4. (인증) 공공협의: 나노물질에 대한 지침

*출처: EFSA (2018.1.12)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80112>

- EFSA는 식품 및 사료 내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응용프로그램의 위해성 평가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자문을 시작. 본 지침 안내서는 신규식품, 식품 및 사료 첨가제 및 살충제 관련 분야 다룸
- 2011년 이전 지침 발표 이후에 일어난 과학 발전, 특히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 고려
- 또한 체외 체내 독성 연구과 관련된 나노물질의 특이한 사항을 고려 나노물질 특성 위험 분석과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하고 개괄하는 방법 제안
- 관련 이해 당사자는 2018년 3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5. (인증/검역) 신규식품 : EU 시장 내 신규식품 품종에 대한 규정 추가

*출처: 유럽위원회 (2018.1.3)

https://ec.europa.eu/info/news/novel-food-new-regulation-adding-food-variety-present-eu-market-enters-force-2018-jan-03_en

-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Regulation (EC) No 258/97 및 Regulation (EC) No 1852/2001을 폐지하고 대체함. 신규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 (EU) 2015/2283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신규식품 허가절차를 개선, 변경하는 규정임
- 이는 식품 부문의 혁신 및 기술발전, 신규식품 및 제 3국의 전통식품에 대한 EU인증 시스템, EU에 허가된 신규식품목록, 데이터보호조항 등을 포함
- 신규식품 허가는 사용조건, 라벨링 요건,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
- 새로운 규정은 식품사업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식품을 안정성을 유지하며 EU시장에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여러 조건 개선함

○ 새로운 규정의 주요 기능 및 개선사항

- 신규식품의 범주 확장: 식물, 동물, 미생물, 세포배양, 무기물 등 식품의 특정범주(곤충, 비타민, 무기질, 식품보조제 등), 1997년 이전에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변형 및 신 분자구조와 나노물질 등) 의 생산공정 및 관행으로 인한 식품을 신규식품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신규식품의 일반 승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옛 제한된 특정 신규 식품허가와 대조적으로 일반적 승인절차를 가짐. 식품사업자는 허가된 신규식품을 사용조건 및 라벨 요건을 충족할 시 EU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 허가된 신규식품의 목록 작성: 허가된 모든 신규식품을 포함하는 목록으로 위원회집행 규정을 통해 장차 승인될 신규식품은 목록에 추가됨. 목록에 추가되면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EU시장에 배치될 수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의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간단하고 집약적인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신규식품의 집중적 안전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가 실시. 유럽연합위원회는 EFSA에 신청서에 대해 문의, 평가의 결과에 근거하여 승인 결정 내림
- 효율성 및 투명성은 안전평가와 승인절차의 기한을 정함으로써 개선되어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어듦
- 보다 신속하고 구조화된 통보시스템 구축. 신규식품에 대한 간소화된 평가절차 가능. 제 3국의 전통적 식품의 안전성을 토대로 새로 제기된 제품이 안전상의 우려가 없다면 유럽시장 진출 가능
- 데이터를 기반으로 5년간 개별 승인 부여해 혁신 촉진. 데이터보호규정은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새로 개발된 과학적 증거 및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신청자는 신규식품에 대한 시장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의 발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실행법규 (EU) 2017/2469 채택. 2015/2283 (EU)의 10조에 언급된 신규식품 적용에 대한 관리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규정함

- 실행법규는 신규식품에 포함되어야하는 식품관리, 기술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유럽식품안전청 EFSA도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함. 식품사업자의 신규식품 등록준비와 제출을 용이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신규식품에 관한 안전평가기록, 행정, 기술 및 과학적 요구사항을 명시
- 신규식품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EC) No 1333/2008의 식품 첨가물
 - (EC) No 1334/2008의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
 - Directive 2009/32/EC의 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추출 용매 에 명시된 식품 및 사료용 유전자 변형식품(GMO)
 - 식품 및 식품성분이 식품 첨가물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우 다른 식품에서의 새로운 용도는 신규식품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함. 식품 강화는 허가가 필요함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없음